

## 재산관리신탁 계약서 개정 대비표

개정 2021. 4. 22

개정전	개정후	비 고
<p>제15조(인감 또는 서명감 신고)</p> <p>① 생략</p> <p>② 수탁자가 신탁금 청구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된 인감 또는 서명을 미리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고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또는 서명의 도용, 위조, 변조,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5조(인감 또는 서명감 신고)</p> <p>① 생략</p> <p>② 수탁자가 신탁금 청구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된 인감 또는 서명을 미리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고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또는 서명의 도용, 위조, 변조,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다만, 수탁자가 인감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 개별약관 시정요청 통보(2021.2.23)에 따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개정</p>